

세무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2014년 2월 pp.217~250
한국세무학회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

정우승* · 김기영**

<요 약>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많은 규정들은 아직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어 기업들에게 세무조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본 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1) 자본화 방법, (2) 자본화 대상 자산, (3)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및 (4) 일반차입금 이자의 한도를 삼고, 분석대상 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한 후 채무상 및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중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달리 수행되고, 재무제표상 자산과 비용이 제각각 나타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기업마다 세무조정이 다르게 발생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이 산출되지 않고 세무조정도 복잡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기업회계기준의 변화를 법인세법이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있으며,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의도와 다르게 수용하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와 차이원인을 기초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화 방법,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계산규정은 정부의 입법취지와 합치되고, 기업들의 회계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차입원가,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세무사, cta.wsj@gmail.com, 010-8780-9227, 주저자

**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kykim@mju.ac.kr, 010-3711-6696, 교신저자

I. 서 론

차입원가(borrowing costs)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말하며, 차입원가의 자본화(capitalization)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인 적격자산(qualifying asset)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차입원가를 건설자금이자(interest during construction)라고 부른다. 차입원가는 그 원가성 유무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간비용설과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취득원가설로 나누어지는데(김광운 2013, 293),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그리고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차입원가에 대한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대상 주권비상장법인에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차입원가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도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차입원가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오래 전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 여부가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만 자본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2010년부터는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일반차입금의 이자도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차입원가와 관련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인세법상 많은 규정들은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어 실무상 기업들에게 세무조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를 복잡하게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은 자본화 방법, 자본화 대상 자산, 자본화 대상 이자, 자본화할 이자의 계산방법, 외환차이 자본화, 자본화 중단 및 토지의 자본화기간 등 많은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는 양자의 차이가 없었지만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될 때 법인세법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생긴 차이들도 있으며,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는 다르게 수용함에 따라 생긴 차이들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본 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중 현행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문 중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차이

가 나는 (1) 자본화 방법, (2) 자본화 대상 자산, (3)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및 (4) 일반차입금 이자의 한도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각 분석대상 별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내용을 기술한 후 그 차이가 기업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사례를 제시하여 분석한다. 사례는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②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중 자본화를 선택한 기업, ③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중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 ④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중 자본화를 선택한 기업 및 ⑤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중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여러 기업의 상황별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자산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각 상황별로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사례분석의 결과와 차이원인을 밝혀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세무조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세제당국에게는 기업의 실무를 반영한 건설적인 세법개정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가 나는 항목을 사례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 및 MBA과정의 세무회계 관련 과목에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학습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차입원가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정리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차이원인을 밝히고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기술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법인세법상의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분석과 그 조화방안에 관하여 진행되었으며, 크게 이론적 분석에 기초한 연구와 재무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분석에 기초한 선행연구로는 이재욱(1996), 장인태(2001), 유재권(2012) 등이 있다. 이재욱(1996)은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개념과 학설상의 대립을 살펴보고,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태도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점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에 대해 세법이 기업회계와는 달리 완고하게 비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완고한 입장이 합리적인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다분히 정책적인 면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건설에 투입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재무비용으로서 손금산입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그 논거들이 대립되어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현실의 양태를 반영하여 우리 기업회계기준과 일본의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은 건설자금이자 처리문제를 일단 기업의 독자적인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장인태(2001)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규제의 취지와 그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별도의 세무 계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의 연구들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의 연구로는 유재권(2012)의 연구가 있다. 유재권(2012)은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 자본화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재무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로는 신현걸(2003), 문성환과 김경태(2009) 등이 있다. 신현걸(2003)은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와 자본화하지 않는 경우 주요 재무비율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실증분석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비용 자본화와 관련된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비용 자본화 여부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세무회계의 건설자금이자 규정과 기업회계의 자본화 금융비용 규정이 서로 달라 기업이 세무조정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성환과 김경태(2009)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건설자금이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무적 효과의 검증 및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자금이자 차이의 조화방안으로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의 범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중소기업회계기준까지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함에 그치지 않고 사례를 중심으로 재무제표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차이원인을 밝혀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Ⅲ. 차입원가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와 사례분석

1. 이 논문의 분석대상

차입원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상당히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들은 크게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문 중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항목(유형 1)과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항목(유형 2)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차이유형	차이 내용	기업회계기준 관련 내용	법인세법 규정
유형 1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문 중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항목	① 자본화 방법	K-IFRS 제1023호 문단 8, 일반기준 제18장 문단 18.4, 중소기업준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2항	법법 제28조 제1항, 법령 제52조 제1항
	② 자본화 대상 자산	K-IFRS 제1023호 문단 5, 7, 일반기준 제18장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준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2항	법령 제52조 제1항
	③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일반기준 제18장 부록 결론 18.1	법령 제52조 제4항
	④ 일반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한도	K-IFRS 제1023호 문단 14, 일반기준 제18장 문단 18.9, 18.11	법령 제52조 제7항 제1호
유형 2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항목 ¹⁾	① 차입금의 외환차이 자본화	K-IFRS 제1023호 문단 6, 일반기준 제18장 문단 18.3	명문 규정 없음
	② 자본화 중단	K-IFRS 제1023호 문단 20, 일반기준 제18장 문단 18.16	명문 규정 없음
	③ 토지의 자본화 대상기간	K-IFRS 제1023호 문단 17, 22, 일반기준 제18장 문단 18.13, 18.14	법통 28-52...1, 대법원 99두4310, 2001.10.30.

1) 이 논문에서는 “유형 2”의 항목에 대하여는 분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항목들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추후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법인세법 법률이나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

(주) 위 표에서 사용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 | | |
|-----------------------|-------------------|
| • K-IFRS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일반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중소기업준 : 중소기업회계기준 | • 법법 : 법인세법 |
| •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 • 법통 : 법인세법 기본통칙 |

본 논문은 현행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문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문 중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4가지 항목(위 <표 1> 중 유형 1의 ①~④)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2. 자본화 방법

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차입원가의 자본화 방법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²⁾”고 하여 강제자본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³⁾”고 하여 선택자본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되어야 하는 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자본화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 또는 취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고 해당 기간의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자본화 중단 기간의 이자도 자본화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기업회계기준과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 실무상 토지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원가에 대하여 건물이 착공되기 전까지는 토지로, 건물이 착공된 이후에는 건물로 자본화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이성태 외, 2012, 207),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건물이 착공되기 전까지는 토지로 자본화하며, 건물이 착공된 이후에는 자본화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토지로 자본화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과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항목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과 실무에서의 처리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이성태 외(2012)의 실무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문단 8.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문단 18.4.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
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⁴⁾”고 하여 선택자본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종래 법인세법을 따라 회계처리하여 온 중
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혼선을 주지 않도록 법인세법의 방식대로 규정한 특징이 있다(김광
윤 2013, 28).

그러나 법인세법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
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⁵⁾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⁶⁾”고 규정하여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⁵⁾는 강제자본화 입장을 취하고 있으
며, “건설자본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할 수 있다⁶⁾”고 규정하여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⁵⁾는 선택자본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자본화 방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구 분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자본화 방법	강제 자본화	선택 자본화	선택자본화	특정차입금 이자 : 강제 자본화 일반차입금 이자 : 선택 자본화

나. 사례분석

아래의 <사례 1>을 토대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차입원가 자본화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조정과 재무제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사례 1

(주)甲(사업연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은 수년전에 취득한 토지에 신사옥을 건설하기 위
해 20×1년 7월 1일에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완공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
는 다음과 같다.

- (1) 20×1년 중의 공사대금은 8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 (2) 20×1년 (주)甲의 차입금은 A은행, B은행 및 C은행 차입금이 있는데, A은행 차입금은 사옥
건설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특정차입금)되었으며, B와 C은행 차입금은 일반 목적

4)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 제2항.

5)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6)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으로 차입(일반차입금)되었다.

- (3) 20×1년 (주)甲의 차입금에 대한 전체 이자는 30,000,000원인데, 이 중 20×1년의 특정차입금 관련 자본화가능 이자는 4,000,000원, 일반차입금 관련 자본화가능 이자는 11,00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동 금액은 법인세법상 자본화 대상금액과 동일하다.

(1) 20×1년 차입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주)甲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다음의 6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황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

(주)甲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에는 특정차입금 이자 4,000,000원과 일반차입금 이자 11,000,000원을 모두 자본화하고 기타의 차입금 이자 15,000,000원은 비용처리한다. 법인세법에서도 특정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해야 하고 일반차입금 이자는 법인이 자본화하기로 선택한 경우 자본화하므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건설중인자산	15,000,000	－ 세무조정 없음－
이 자 비 용	15,000,000	
(대) 현 금	30,000,000	

[상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주)甲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차입금 이자 30,000,000원을 비용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특정차입금 이자 4,000,000원은 자본화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일반차입금 이자는 법인이 자본화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이자비용	30,000,000	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4,000,000 (유보)
(대) 현 금	30,000,000	

[상황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주)甲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황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한다.

[상황 4]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주)甲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 2]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한다.

[상황 5]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만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화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는 경우 특정차입금 이자는 강제자본화하지만 일반차입금 이자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특정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만 선택한 경우[상황 5]와 일반차입금 이자까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6]로 구분할 수 있다.

(주)甲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만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특정차입금 이자 4,000,000원은 자본화하고, 기타의 차입금 이자 26,000,000원은 비용처리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의 입장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건설중인자산	4,000,000	－ 세무조정 없음－
이 자 비 용	26,000,000	
(대) 현 금	30,000,000	

[상황 6]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주)甲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상황 1] 및 [상황 3]과 동일하다.

(2) 20×1년 차입원가가 재무제표 작성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

20×1년 차입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재무제표 작성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 및 세법상 자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

구 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상황 6
[재무상태표]						
건설중인자산	815,000,000	800,000,000	815,000,000	800,000,000	804,000,000	815,000,00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건설중인자산	－	4,000,000	－	4,000,000	－	－
[세무상 자산]						
건설중인자산	815,000,000	804,000,000	815,000,000	804,000,000	804,000,000	815,000,000

② 당기순이익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

구 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상황 6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15,000,000	-30,000,000	-15,000,000	-30,000,000	-26,000,000	-15,000,000
[세무조정]						
건설자금이자	-	+4,000,000	-	+4,000,000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	-15,000,000	-26,000,000	-15,000,000	-26,000,000	-26,000,000	-15,000,000

분석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상황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3)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6)에는 다른 상황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대보고된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상황 2),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상황 4)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만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5)에는 다른 상황에 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적게 산출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관련 이자의 자본화를 기업의 선택에 맡긴 결과로 해석된다.

위 결과를 보면 법인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나타나 기업 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상 자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도 법인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기업 간 해당 사업연도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위에서 제시한 상황마다 세무조정이 다르고 또한 복잡하게 발생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자본화 대상 자산

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마다 차이가 있다.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① 채고자산, ② 제조설비자산, ③ 전력생산설비, ④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이 적격자산

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이라고 규정⁸⁾하고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대동소이하다. 한편,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으로 규정⁹⁾하고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자본화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여기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유형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¹¹⁾ 그러나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상 자본화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용 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이나 비업무용자산도 법인세법상 자본화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¹²⁾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구 분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자본화 대상자산	적격자산 • 제조기간 장기인 재고 자산 • 제조설비자산 • 전력생산설비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적격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제조기간이 1년 이상인 재고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제조기간이 1년 이상인 재고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나. 사례분석

아래의 <사례 2>를 토대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자본화 대상 자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조정과 재무제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문단 5 및 문단 7.
 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용어의 정의.
 9)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 제2항.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11) 서이 46012-11936, 2002.10.23.
 12)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법인 46012-1339, 1993.5.12.

▶ 사례 2

주택건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甲(사업연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은 20×0년 8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에 주택건설을 완료하고 동 주택은 20×2년에 판매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차입원가를 제외한 주택건설원가는 8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 (2) 동 주택건설과 관련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4,000,000원,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11,00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기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15,000,000원이다.

(1) 20×1년 차입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주)甲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다음의 5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황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

(주)甲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에는 채고자산과 관련된 특정차입금 이자 4,000,000원과 일반차입금 이자 11,000,000원을 모두 자본화하고 기타의 차입금 이자 15,000,000원은 비용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채고자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본화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주)甲이 자본화한 15,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채고자산	15,000,000	손금산입 채고자산 15,000,000 (△유보)
이자비용	15,000,000	
(대) 현 금	30,000,000	

[상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주)甲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차입금 이자 30,000,000원을 비용처리한다. 법인세법에서도 채고자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자본화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이자비용	30,000,000	— 세무조정 없음 —
(대) 현 금	30,000,000	

[상황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주)甲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황 1]과 동

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한다.

[상황 4]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주)甲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 2]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한다.

[상황 5]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화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결국 (주)甲은 모든 차입금에 대한 이자 30,000,000원을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황 2] 및 [상황 4]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한다.

(2) 20×1년 차입원가가 재무제표 작성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

20×1년 차입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재무제표 작성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 및 세법상 자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

구 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815,000,000	800,000,000	815,000,000	800,000,000	800,000,00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재고자산	△15,000,000	—	△15,000,000	—	—
[세무상 자산]					
재고자산	800,000,000	800,000,000	800,000,000	800,000,000	800,000,000

② 당기순이익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

구 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15,000,000	-30,000,000	-15,000,000	-30,000,000	-30,000,000
[세무조정]					
건설자금이자	-15,000,000	—	-15,000,000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분석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상황 1)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3)에는 다른 상황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대보고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동일하게 산출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는 법인세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결과를 보면 <사례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나타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제시한 상황마다 세무조정이 다르게 발생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자본화 대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자본화 여부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입장이 다르다. 먼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차입원가로 분류되나, 자산취득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원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서 제외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연체이자의 자본화를 불허하고 있다.¹³⁾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체이자의 자본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만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로 규정¹⁴⁾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입장과 같이 적격자산의 취득 등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연체이자는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도 이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체이자도 반드시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다.¹⁵⁾ 한편,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연체이자를 자본화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부록 결론 18.1.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문단 8.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표 4〉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구 분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연체이자 자본화	별도 규정 없지만 연체이자는 자본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가능	연체이자는 자본화하지 않음	연체이자는 자본화 함	연체이자는 자본화 함

나. 사례분석

아래의 <사례 3>을 토대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연체이자 자본화 여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조정과 재무제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사례 3

(주)甲(사업연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은 수년전에 취득한 토지에 신사옥을 건설하기 위해 20×1년 7월 1일에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완공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20×1년 중의 공사대금은 8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 (2) 20×1년 (주)甲의 차입금은 A은행 차입금이 있는데, A은행 차입금은 사옥 건설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특정차입금)되었다.
- (3) 20×1년 (주)甲의 A은행 차입금에 대한 전체 이자는 30,000,000원이며 건설기간 중의 이자는 5,100,000원이다. 한편 건설기간의 이자 중 1,000,000원은 A은행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이며, 100,000원은 연체이자에 대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이다.

(1) 20×1년 차입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주)甲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다음의 5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황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

(주)甲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에는 연체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자본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기간 중의 이자 5,100,000원에서 연체이자 1,000,000원과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 100,000원을 차감한 4,000,000원만 자본화하고 나머지 이자 26,000,000원은 모두 비용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연체이자도 자본화해야 하므로 연체이자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건설중인자산	4,000,000	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1,000,000 (유보)
이 자 비 용	26,000,000	
(대) 현 금	30,000,000	

[상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주)甲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차입금 이자 30,000,000원을 비용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연체이자를 포함한 특정차입금 이자 5,000,000원은 자본화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이자비용	30,000,000	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5,000,000 (유보)
(대) 현 금	30,000,000	

[상황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주)甲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황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한다.

[상황 4]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주)甲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 2]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한다.

[상황 5]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포함한 특정차입금 이자 5,000,000원은 자본화한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건설중인자산	5,000,000	－ 세무조정 없음－
이 자 비 용	25,000,000	
(대) 현 금	30,000,000	

(2) 20×1년 차입원가가 재무제표 작성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

20×1년 차입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재무제표 작성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 및 세법상 자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

구 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재무상태표]					
건설중인자산	804,000,000	800,000,000	804,000,000	800,000,000	805,000,00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건설중인자산	1,000,000	5,000,000	1,000,000	5,000,000	—
[세무상 자산]					
건설중인자산	805,000,000	805,000,000	805,000,000	805,000,000	805,000,000

② 당기순이익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

구 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26,000,000	-30,000,000	-26,000,000	-30,000,000	-25,000,000
[세무조정]					
건설자금이자	+1,000,000	+5,000,000	+1,000,000	+5,0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25,000,000

분석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상황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3)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5)에는 다른 상황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대보고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동일하게 산출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는 법인세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연체이자를 자본화하기 때문이다.

위 결과를 보면 <사례 1~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나타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제시한 상황마다 세무조정이 다르게 발생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5. 일반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한도

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의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여기에서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그리고 법인세법상 규정이 유사하다.¹⁶⁾

그러나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차이가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를 한도로 하여 자본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반면 법인세법은 이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과는 그 기간을 달리한다.¹⁸⁾ 한편,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이 자본화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인세법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일반차입금 자본화가능이자 한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구 분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일반차입금 이자 자본화한도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의 합계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의 합계

나. 사례분석

아래의 <사례 4>를 토대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자본화가능이자의 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조정과 재무제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문단 1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문단 18.9, 18.11,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

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문단 1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문단 18.12.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 제1호.

▶ 사례 4

(주)甲(사업연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은 수년전에 취득한 토지에 신사옥을 건설하기 위해 20×1년 7월 1일에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완공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계산의 편의상 1개월은 30일,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1) 20×1년 중의 공사대금 지출액

일 자	지출액
20×1년 7월 1일	400,000,000원
20×1년 10월 1일	400,000,000원
합 계	800,000,000원

(2) 차입금 상황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	연이자율	차입기간
A은행	20×1년 1월 1일	100,000,000원	8%	2년
B은행	20×1년 1월 1일	100,000,000원	10%	3년
C은행	20×1년 1월 1일	100,000,000원	12%	2년

위 차입금은 모두 만기 일시상환조건이며, 이자는 매년말과 만기에 지급된다. 차입금 중 A은행 차입금은 사옥 건설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특정차입금)되었으며, B와 C은행 차입금은 일반 목적으로 차입(일반차입금)되었다.

(1) 20×1년 차입원가의 계산

먼저 위 사례에서 20×1년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원가 계산

①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 $100,000,000\text{원} \times 8\% \times (180\text{일} \div 360\text{일}) = 4,000,000\text{원}$

②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 $\text{Min}(\text{㉠}, \text{㉡}) = 22,000,000\text{원}$

㉠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300,000,000\text{원}^{*1} - 100,000,000\text{원} \times (180\text{일} \div 360\text{일})\} \times 11\%^{*2} = 27,500,000\text{원}$$

$$\begin{aligned} *1 \text{ 평균지출액} &: \{400,000,000\text{원} \times (180\text{일} \div 360\text{일})\} + \{400,000,000\text{원} \times (90\text{일} \div 360\text{일})\} \\ &= 300,000,000\text{원} \end{aligned}$$

$$\begin{aligned} *2 \text{ 자본화이자율} &: \frac{\text{총차입원가}}{\text{연평균차입금총액}} = \frac{100,000,000\text{원} \times 10\% + 100,000,000\text{원} \times 12\%}{100,000,000\text{원} + 100,000,000\text{원}} \\ &= 11\% \end{aligned}$$

⑥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 :

$$\{100,000,000\text{원} \times 10\%\} + \{100,000,000\text{원} \times 12\%\} = 22,000,000\text{원}$$

③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합계 : ①+②=26,000,000원

(나) 법인세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

① 특정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 : $100,000,000\text{원} \times 8\% \times (180\text{일} \div 360\text{일}) = 4,000,000\text{원}$

② 일반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 : $\text{Min}(\text{㉠}, \text{㉡}) = 11,000,000\text{원}$

④ 자본화가능 건설자금이자 :

$$\{300,000,000\text{원}^{*1} - 100,000,000\text{원} \times (180\text{일} \div 360\text{일})\} \times 11\%^{*2} = 27,500,000\text{원}$$

$$\begin{aligned} *1 \text{ 평균지출액} &: \{400,000,000\text{원} \times (180\text{일} \div 360\text{일})\} + \{400,000,000\text{원} \times (90\text{일} \div 360\text{일})\} \\ &= 300,000,000\text{원} \end{aligned}$$

$$\begin{aligned} *2 \text{ 자본화이자율} &: \frac{\text{총차입원가}}{\text{연평균차입금총액}} = \frac{100,000,000\text{원} \times 10\% + 100,000,000\text{원} \times 12\%}{100,000,000\text{원} + 100,000,000\text{원}} \\ &= 11\% \end{aligned}$$

⑥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금이자 :

$$\{100,000,000\text{원} \times 10\% \times (180\text{일} \div 360\text{일})\}$$

$$+ \{100,000,000\text{원} \times 12\% \times (180\text{일} \div 360\text{일})\}$$

$$= 11,000,000\text{원}$$

③ 자본화가능 건설자금이자 합계 : ①+②=15,000,000원

계산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특정차입금 이자는 4,000,000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차입금 이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22,000,000원이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11,000,000원이다. 이는 일반차입금 자본화가능 이자의 한도가 서로 달라서 생긴 결과이다.

(2) 20×1년 차입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주)甲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다음의 6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황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

(주)甲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인 경우에는 특정차입금 이자 4,000,000원과 일반차입금 이자 22,000,000원을 모두 자본화하고 기타의 차입금 이자 4,000,000원은 비용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차입금 이자는 11,000,000원이므로 (주)甲이 자본화한 일반차입금 이자와의 차이 11,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한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건설중인자산	26,000,000	손금산입 건설중인자산 11,000,000 (△유보)
이 자 비 용	4,000,000	
(대) 현 금	30,000,000	

[상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주)甲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차입금 이자 30,000,000원을 비용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특정차입금 이자 4,000,000원은 자본화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일반차입금 이자는 법인이 자본화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이자비용	30,000,000	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4,000,000 (유보)
(대) 현 금	30,000,000	

[상황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주)甲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황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한다.

[상황 4]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주)甲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 2]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한다.

[상황 5]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만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주)甲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만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특정차입금 이자 4,000,000원은 자본화하고, 기타의 차입금 이자 26,000,000원은 비용처리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의 입장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건설중인자산	4,000,000	— 세무조정 없음 —
이 자 비 용	26,000,000	
(대) 현 금	30,000,000	

[상황 6]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주)甲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특정차입금 이자 4,000,000원과 일반차입금 이자 11,000,000원을 자본화하고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 건설중인자산	15,000,000	－세무조정 없음－
이 자 비 용	15,000,000	
(대) 현 금	30,000,000	

(3) 20×1년 차입원가가 재무제표 작성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

20×1년 차입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재무제표 작성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 및 세법상 자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

구 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상황 6
[재무상태표]						
건설중인자산	826,000,000	800,000,000	826,000,000	800,000,000	804,000,000	815,000,00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건설중인자산	△11,000,000	4,000,000	△11,000,000	4,000,000	－	－
[세무상 자산]						
건설중인자산	815,000,000	804,000,000	815,000,000	804,000,000	804,000,000	815,000,000

② 당기순이익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

구 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상황 6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4,000,000	－30,000,000	－4,000,000	－30,000,000	－26,000,000	－15,000,000
[세무조정]						
건설자금이자	－11,000,000	＋4,000,000	－11,000,000	＋4,000,000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소득금액	－15,000,000	－26,000,000	－15,000,000	－26,000,000	－26,000,000	－15,000,000

분석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상황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3)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6)에는 다른 상황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대보고된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상황 2),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상황 4)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으로서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만 자본화를 선택한 경우(상황 5)에는 다른 상황에 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적게 산출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관련 이자의 자본화를 기업의 선택에 맡긴 결과로 해석된다.

위 결과를 보면 <사례 1~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나타나 기업 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상 자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도 법인이 어떠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기업 간 해당 사업연도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사례 4>의 경우에는 일반차입금 계산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이 달라 <사례 1> ~ <사례 3>보다 더 세무조정 과정이 복잡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IV. 차입원가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원인과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위의 III장에서 차입원가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앞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4가지 차이에 대하여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을 밝혀보고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1.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원인

가. 자본화 방법

기업회계기준은 1970년대 증권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부터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8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면 개정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를 강제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회

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1-55 “금융비용 자본화”에서 정하였으며 이때부터는 특정차입금의 이자 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의 이자도 자본화하도록 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함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2001년 12월 27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를 제정하였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비용의 선택적 자본화를 규정하였다. 2007년 3월 15일에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향상을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8년 11월 28일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차입원가”를 제정하였다. 동 기준서에서는 차입원가에 대한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다. 한편, 회계기준위원회는 이해관계의 정도와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대상 주권비상장법인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동 기준 제18장에서는 차입원가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였다.¹⁹⁾ 또한 법무부는 2013년 2월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적용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는데, 동 기준에서도 건설자금이자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회계기준은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비용화하기도 하고 자본화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강제자본화를 원칙으로 하되,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법인세법은 오래 전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을 수용하여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강제자본화하고,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를 허용치 않았다. 그 이후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이 계속 변하더라도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다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차입금도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²⁰⁾

즉, 차입원가의 자본화 방법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의 변화를 법인세법이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다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수정을 가해 지금과 같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희(2013, 895)도 현행 법인세법은 소득계산의 논리가 역사적 우연을 거쳐 지금의 꼴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다.

나. 자본화 대상 자산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은 1995년까지는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였다. 그러다 1996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으며,²¹⁾ 1998년부터는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뿐만 아

1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 전문, 2011.12.23., pp.16-34.

20) 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p.175.

2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 전문, 2011.12.23., p.21.

나라 무형자산과 투자자산까지 자본화 대상자산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다.²²⁾ 이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투자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채고자산까지만 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자본화하는 경우 결국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한정되어 진다.

법인세법은 오래 전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자산을 고정자산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과 관련된 이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처음 규정된 이후 법인세법상 자본화 대상 자산은 확대된 적이 없다.

즉, 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도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의 변화를 법인세법이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여 지금과 같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2001년 12월 27일 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은 차입금의 연체이자도 자본화하도록 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러한 성격의 이자비용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된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자본화 대상 이자에 포함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²³⁾ 그러나 2001년 12월 27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분류되나, 자산 취득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원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에서 제외하였다.²⁴⁾ 이후 지금의 일반기업회계기준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⁵⁾

법인세법도 2001년 12월 27일 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기 전까지의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자본화한다고 규정하고 이 조문이 오늘 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즉, 차입금의 연체이자에 대한 자본화 여부도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의 변화를 법인세법이 수용하지 못하여 지금과 같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일반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한도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가 규정된 이래 그 계산방법은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거치기까지 큰 변

22)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

23)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1-55 문단 2-2.

24)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부록1 결론도출근거 A16.

2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부록 결론 18.1.

화가 없었다.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개별적으로 차입된 특정차입금을 제외하고는 적격자산과 일반차입금들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이자는 대상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²⁶⁾ 한편,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직접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적절한 한도를 두었는데,²⁷⁾ 그 한도는 일반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에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한도로 하는 방안은 “실무상 적용가능성을 위하여” 자본화대상기간과 차입금별 차입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²⁸⁾

법인세법은 2010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세무조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수용하면서 그 계산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에 마련하였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계산식을 규정하였다. 이 때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한도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해놓은 “회계기간 동안의 이자”가 아닌 “건설에 소요된 기간의 이자”로 규정하였다.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특정차입금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간 동안의 이자만 자본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론되지만 이는 “평균”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차입금 계산 논리와 “실무상 적용가능성”을 반영한 한도 개념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2.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가. 자본화 방법

법인세법은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강제자본화하고,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선택자본화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올바른 개정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특정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유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첫째, 법인세법에서 특정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강제자본화하는 규정은 앞의 <사례 1>을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으로서 차입원가 자본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 즉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복잡한 세무조정을

26)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1-55 문단 6-1.

2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부록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18.16.

28)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1-55 문단 6-7.

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

둘째, 앞의 <사례 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일반차입금 이자를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떠한 자본화정책을 취하는 지에 따라 기업간 과세소득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모든 기업에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강제로 자본화하도록 하여도 동일한 과세소득이 산출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이미 수평적 공평성은 깨어진 상태이므로 특정차입금의 강제자본화로 이를 달성할 수는 없다.

셋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그리 중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성환과 김경태(2009, 81-86)의 연구에서는 상장기업 감사보고서의 주요세무조정사항에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유보액을 실증분석하여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세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과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따를 경우의 법인세 변화비율을 살펴본 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을 일치하여도 양 규정의 목적달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넷째, 이미 과세당국에서는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항목이 많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한 경우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연지급수입이자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모두 세법상 원칙적인 취득가액 결정에 따라 세무조정할 경우 유보로 처분되는 일시적인 차이에 해당하지만 과세실익이 크지 않고 실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도 세법에서 그 특례를 인정한 것들이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세무조정도 이러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차이이므로 과세시점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과세소득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문성환과 김경태(2009)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큰 실익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특정차입금의 이자이든 일반차입금의 이자이든 법인세법상 차입원가의 자본화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정한다는 세법 본연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본화 대상 자산

법인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만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고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은 자본화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굳이 사업용 고정자산만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 한정지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에서 자본화 대상 자산을 한정지은 규정은 앞의 <사례 2>를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재고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을 자본화한 기업들에게 복잡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

기게 된다. 또한 이 세무조정도 일시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서 큰 실익이 없어 보인다.

둘째,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기타사의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다.²⁹⁾ 따라서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가 자본화되어도 그 이자는 이 규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그 손금성이 부인되므로 자본화 대상 자산을 “사업용”으로만 한정지를 필요가 없다.

셋째, 현행 법인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이나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³⁰⁾ 동 취득가액에는 연지급수입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과 관련된 다른 취득부대비용과는 달리 차입원가만 자본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논리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고정자산보다 더 빠르게 비용화되므로 재고자산을 자본화 대상 자산에 제외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 조문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법인세법은 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자본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굳이 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자본화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에서 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자본화하는 규정은 앞의 <사례 3>을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차입금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복잡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 또한 이 세무조정도 일시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서 큰 실익이 없어 보인다.

둘째, 앞서 차이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체이자 자본화 규정은 오래 전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이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연체이자를 자본화 대상 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을 수용하여 생긴 조문이라면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이 변한 경우 이에 따라 수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29)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30)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및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 차입금의 연체이자 외의 다른 연체이자는 현행 법인세법상 모두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³²⁾ 차입금의 연체이자만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연체이자에 대한 세법상 취급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차입금의 연체이자는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을 수용하여 자본화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연체이자에 대한 세법상 취급과 일관성이 있고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일반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한도

법인세법은 일반차입금 이자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고, “건설에 소요된 기간의 이자”를 자본화 이자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법인세법에서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한도를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규정함으로써 앞의 <사례 4>를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자본화정책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너무 복잡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주게 된다. 이는 기업들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 이자의 선택자본화를 도입하였다는 정부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둘째, 일반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한도와 관련된 법인세법의 규정은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보다 더 논리적이다. 그러나 앞서 차이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한도를 “회계기간 동안의 이자”로 규정한 이유는 다소 논리적이진 않지만 실무상 적용이 어렵기 때문인데 오래전부터 기업회계기준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 입장이었다는 것은 실무상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건설기간 동안의 이자”로 규정하여 세무조정하도록 하면 기업들의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의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에 별도로 두고 있는 일반차입금 이자의 계산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차입금 이자의 계산방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정부에서 밝힌 일반차입금 이자의 도입취지와 합치되고, 기업들의 회계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2)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 제3호~제6호.

V. 결 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법인세법은 기업들의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많은 규정들은 아직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어 기업들에게 세무조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본 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중 현행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문들 중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1) 자본화 방법, (2) 자본화 대상 자산, (3) 연체이자 자본화 여부 및 (4) 일반차입금 이자의 한도를 삼았다. 각 분석대상 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한 후 재무제표상 자산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기업별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달리 수행되고, 재무제표상 자산과 비용이 제각각 나타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 또한 자본화 정책을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이 다르게 발생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이 산출되지 않고 세무조정도 복잡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본화 방법,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의 변화를 법인세법이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 한도의 차이는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와 차이원인을 기초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차입원가의 자본화 방법은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정한다는 세법 본연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 조문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차입금의 연체이자는 다른 연체이자에 대한 세법상 취급과 일관성이 도모하고,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을 수용하여 자본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계산규정은 정부의 입법취지와 합치되고, 기업들의 회계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³⁾

본 연구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필요한 차이를 해소하도록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세무조정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제당국에게는 법인세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의 실무를 반영한 건설적인 세법개정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를 학부 및 MBA과정의 세무회계 관련 과목에서 이용하면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및 그로 인하여 재무제표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학습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학습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중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문과 관련한 차이만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명문규정이 없어서 실무상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분석이 진행되고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해야 차입원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세무조정 업무 프로세스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은 기본적으로 차입원가 자본화는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금보다 우월한 개정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³⁴⁾ 관련 법인세법 내용을 개정할 때는 더 심사숙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33) 문성환과 김경태(2009, 87)의 연구에서도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방안으로는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이 타당성을 가지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세법의 건설자금이자규정은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법의 금융비용 자본화정책이 다른 자본화 정책 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다. 둘째, 건설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세법의 규정 보다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나타낸다. 셋째, 건설자금이자의 강제계상은 이자비용을 비용으로서 인정하는 세법의 일반논리에 어긋나며, 그에 합당한 타당성이 없다. 넷째, 건설자금이자의 강제계상은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면이 있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세법의 정책적인 목표에 어긋난다.
- 34) 심태섭 외(201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국제회계기준을 먼저 도입한 영국, 호주 및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의 도입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영국 세법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후에도 종전과 같이 특정차입금의 이자만 자본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호주나 이탈리아 세법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의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이 꼭 우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제당국에서는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세계 각국의 도입사례도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세법의 개정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 김광윤. 2013a. 『세무회계』. 탐진.
- _____. 2013b.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5호 : 9-39.
- 문성환·김경태. 2009.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분석과 조화방안 : 건설자금이자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8권 제3호 : 69-102.
- 신현걸. 2003. “금융비용 자본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 39-63.
- 심태섭 외. 2010. 『IFRS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구자은·최기호. 2012. “국제회계기준시대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 분리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 309-341.
- 유재권. 2012. “차입원가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 164-168.
- 이성태·박상현·배진섭. 2012.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실무사례 중심으로』. 율곡출판사.
- 이성엽·전규안·김완희. 2012. “법인세법상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91-116.
- 이재욱. 1996.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지급이자의 자본화문제”. 조세법연구 제2집 : 232-274.
- 이창희. 2013. 『세법강의』. 박영사.
- 장인태. 2001.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규제-법인세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7집 : 7-45.
- 정우승. 2013. 『세무회계연습 I』. 상경사.

Improvement of Corporate Income Tax Law on the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GAAP and Income Tax Law -

Woo-seung Jung* · Ki Young Kim**

〈Abstract〉

Many provisions of Corporate Income Tax Law related to the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are still different from GAAP, placing tax adjustment burden on compan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GAAP related to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and examined the cause and then presented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Corporate Income Tax Law.

This study analyzed (1) capitalization method, (2) assets for capitalization, (3) whether overdue interest was capitalized and (4) limit of general debt interest and carried out journalizing and tax adjustment by presenting cases by analysis target and then analyzed financial and tax effects. As a result, journalizing and tax adjustment are performed differently and assets and costs in financial statement vary depending on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by the company out of K-IFRS, K-GAAP and AS-SME(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therefore, it turned out that there may be a problem in inter-firm comparability. And it was found that each company shows different tax adjustment depending on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by the company and therefore, the same taxable income is not calculated and complicated tax adjustment appears. With respect to borrowing costs capitalization,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GAAP was examined and as a result, in some cases, the difference was caused because Corporate Income Tax Law did not accept changes in GAAP at the right time and in other cases, the difference was caused because when accepting the contents of GAAP, Corporate Income Tax Law accepted them differently from the intent of GAAP.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Corporate Income Tax Law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and cause of difference. First, capitalization method, scope of capitalization target assets and whether overdue interest was capitalized are desirable to follow GAAP to contribute to easing the burden of the tax adjustment of companies.

* Adjunct Professor of Ajou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 Associate Professor of Myongji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cond,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provision and accept the contents prescribed in GAAP as they are to ensure that the calculation provision of general debt related borrowing costs can be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government and relieve the accounting practice difficulties of companies.

〈Key words〉 borrowing costs,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capitalization, K-IFRS